



## 대전지방법원

### 판 결

사 건 2025고단3002 저작권법위반  
피 고 인 A  
검 사 한승훈(기소), 이수지(공판)  
판 결 선 고 2025. 10. 30.

### 주 문

피고인을 벌금 2,000,000원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,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 죄 사 실

누구든지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2025. 4. 10.경부터 2025. 4. 17.경까지 세종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IP주소 "(IPv4 1 생략)" 및 이메일주소 "(이메일 1 생략)"을 사용하여 D 회사의 저작물인 "E"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위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그 밖



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 1. 고소장

#### 1. F의 진술서

#### 1. 증거자료(저작권청 등록자료, 크랙정보 등)

#### 1.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회신자료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제136조 제1항 제1호, 벌금형 선택

###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(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)

##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(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)

## 양형의 이유

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의 집행을 유예한다.

○ 불리한 정상: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.

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.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5-11-20

사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.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고영식            \_\_\_\_\_